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성인지 예산현황
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논산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분	사업수	예산액
총계	72	24,974
여성정책추진사업	19	4,425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38	12,732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15	7,817

▶ 2017년 당초예산 기준 (성인지 예산 바로가기  [누르세요](#))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2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논산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616,825	2,578	3

▶ 2017년 당초예산 기준

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원 기타 부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칙


※ 별첨2. 주민참여예산 세부사업

4-3. 성과계획서

- 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☐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논산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계	10	76	162	166	541,556	548,381	△ 6,825
의회사무국	1	1	2	2	2,038	2,024	15
전략기획실	1	3	7	6	1,336	595	741
예산담당관	1	2	5	4	12,640	27,311	△ 14,672
감사담당관	1	1	3	4	141	137	4
홍보담당관	1	1	5	3	1,354	1,117	237
친절행정국	1	28	57	63	273,730	271,006	2,725
행복도시국	1	25	46	53	186,506	185,807	699
희망논산추진단	1	4	6	4	13,278	8,645	4,634
직속기관	1	6	24	22	35,323	35,528	△ 206
사업소	1	5	7	5	5,033	6,007	△ 974

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 (성과계획서 바로가기  [누르세요](#))

4-4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16.89	61.83	29.47	24.39	54.34	99.85

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
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79	79	0
	부단체장	56	56	0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76	276	0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0	68	68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73	73	0
	의원국외여비	24	24	0
지방보조금		78,903	17,903	△61,000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103	103	0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1,339	1,400	61
공무원 일·숙직비		80	80	0
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)'을 참조 하세요 (지방재정 365 바로가기 [☞ 누르세요](#))
- ▶ 의원국외여비 편성기준은 의원정수 12명 ×기준액(2,000천원)으로 산출
- ▶ 지방보조금 기준액은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(총한도액)×(1+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 수입 평균증감율)으로 예산편성액은 기준액보다 작게 편성함
- ▶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구분에 따라 중소도시형 기초단체(24개, 50만이하시)에 해당하며, 기준액(1인당 평균) 1,132천원으로 기준액으로 편성함

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출 효율화)

- 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(세출 효율화)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(세출 효율화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- ☐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요 반영액	
	2016년	2017년
계	△407	△1,677
인건비 절감	0	0
지방의회경비 절감	54	50
업무추진비 절감	94	66
행사·축제성경비 절감	△555	1,152
지방보조금(민간이전경비) 절감	0	△2,945
지방청사 관리·운영	0	0
읍면동 통합운영	0	0
민간위탁금 절감	0	0

- ▶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6. 12. 00.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4-7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입확충)

- 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(세입확충)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- ☐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입 반영액	
	2016년	2017년
계	△3,625	△3,493
지방세 징수율 제고	△466	△194
지방세 체납액 축소	△1,883	△1,992
경상세외수입 확충	649	519
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△1,262	△1,162
탄력세율 적용	△663	△664
지방세 감면액 축소	0	0

- ▶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6. 12. 00.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
4-8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- ☐ 2016년에 우리 논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.

4-9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- ☐ 2016년에 우리 논산시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증액 사유	평가분야와 성적	지방교부세 증액금액
합 계		416
감액·보전 인센티브	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감액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인센티브 증액됨	416